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45569 판결 [물건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78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45569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학진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변론 종결2018. 12. 13.

판결 선고2019. 1. 17.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0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고철판매업자인 피고 C은 E 대표 피고 B(피고 C의 배우자) 명의로 2015. 4.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G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일체를 대금 470,000,000원(1회 2015. 4. 15. 100,000,000원, 2015. 4. 21. 370,000,000원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업기간을 2015. 4. 15.~2015. 5. 31.로 규정하고, 2회차 대금 370,000,000원이 2015. 4. 21.까지 입금되지 않을시 1회차 입금 1억 원은 F에 귀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D(상호 : H, 고철판매업자), 기간 2015. 4. 16. ~ 2015. 6. 15.로 하여 G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스텐스크랩 약 150톤(철거완료시점까지 발생량 전체)을 1,300원/kg(총 195,000,000원 상당임)에 공급하는 내용의 2015. 4. 16.자 스텐스크랩매매계약서가 원고의 인장만 날인된 채로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비철매매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매수인은 4월 16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
- 대금정산은 출하되는 비철(스텐고철)에 대하여 선 지급 된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 선 지급금액에 준한 물건이 인도 되지 않을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차액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5. 4. 16. 피고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 D는 피고 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 C은 피고 B 계좌에서 F 주식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4. 16.자 회계원장에 1억 원을 피고 D에 대한 선급금(-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5. 4. 17. 매도인을 E 대표 피고 B,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기간 2015. 4. 17. ~ 2015. 6. 16. 철스크랩 약 1,500톤(철거완료시점까지 발생량 전체)을 205원/kg(총 307,500,000원 상당)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이라 한다).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에 피고 D는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

마. 피고 D는 2015. 4. 20. 원고에게 비철(스텐) 7,893,600원어치를 납품하고 2015. 4. 30. 세금계산서(수량 5,520kg, 단가 1,300원)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5. 4. 20.자 회계원장에서 피고 D에 대한 선급금(-외상매입금)에서 7,893,600원을 공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바. 2015. 4. 21.까지 2회차 매매대금 370,000,000원이 I에 지급되지 못하였다. I은 2015. 4. 27. 주식회사 J과 G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일체를 작업기간 2015. 4. 28. ~ 2015. 6. 12. 대금 370,000,000원(2015. 4. 27.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은 I에 고철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식회사 J에 위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고철판매업자들인 피고 C, D와 철과 비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I과 고철매매계약이 종료되어 이행불능되었다.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계약금(선급금)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C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와 계약금(선금금) 1억 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명의대여자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든 중대한 과실이 있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다.

다. 피고 D

피고 D는 철과 비철이 포함된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에 단지 입회인으로 날인하였을 뿐이고 이를 보증하지 않았다. 원고와 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고철매매계약의 당사자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 D와 철과 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선금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2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계약금 1억 원 지급 조항은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갑1)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철매매계약서에 있다. 이 사건 비철매매계약서(갑6) 제5조에 따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제4조에 따라 피고 D는 2015. 4. 20. 원고에게 스텐레스(비철)를 단가 1,300원/kg로 7,893,600원어치를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갑1)상 고철 단가는 205원/kg으로 매매대금이 총 307,500,000원이 되는 바, 피고 C은 F으로부터 철과 비철을 470,000,000원에 매수한 점(갑12)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상 고철에는 비철이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상 고철에 비철이 포함되어 있다면 470,000,000원에 매수하여 307,500,000원에 매도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고철 단가 205원/kg은 비철단가 1,300원/kg과 차이가 난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선금금) 1억 원은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307,500,000원과 이 사건 비철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합한 502,500,000원의 계약금(선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 C, D는 매수인 명의를 K 대표 피고 L로 하여 F으로부터 G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일체를 대금 470,000,000원에 매수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되, 피고 C이 철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 D가 비철

부분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및 협상을 피고 C와 진행하고 F와 고철매매계약도 피고 C이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점, 피고 B와 어떠한 연락도 취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 B이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2015. 4. 27. 피고 C은 I에 고철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식회사 J에 위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하고, 주식회사 J은 종전 47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370,000,000원에 인수하였는바, 그 차액 1억 원 중 일부가 피고 C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철과 비철 매매계약은 위 피고들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따라서 고철판매업자인 피고 C, D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선급금 잔액 92,106,400원(100,000,000원 ~ 7,893,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남인수